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이의신청 규정 정비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73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이의신청 규정 정비 ..... | 2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4  |
| 나. 검토의견 .....                         | 5  |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 현황 .....       | 5  |
| 2) 유사법률안 제출 현황 .....                  | 7  |
| 3) 검토의견 .....                         | 9  |
| 2. 부칙 .....                           | 15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15 |
| 나. 검토의견 .....                         | 16 |
| 1) 부칙 제1조: 시행일 .....                  | 16 |
| 2) 부칙 제2조: 재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       | 17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

### Ⅲ. 검토의견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이의신청 규정 정비

개정안은 현행법상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이의신청 규정을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br>1.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br>3.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4.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br>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u>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u><br><u>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u> |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u>                                                                                                                                                                                                                                                                                                                                                                                                                            |                                                                                                                                                                      |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 <p>※ 관계 조문</p> <p>「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li> <li>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li> <li>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li> <li>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li> <li>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li> <li>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li> </ol> <p>시행령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li> <li>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li> <li>3. 이의신청 이유</li> </ol> <p>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⑤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p> <p>⑥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                                                  |

| 현 행                                                    | 개 정 안                                                  |
|--------------------------------------------------------|--------------------------------------------------------|
| ⑥ 그 밖에 인증 신청·심사·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그 밖에 인증 신청·심사·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시 처리기간 등을 행정기본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신청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법 제22조제6항(안 제22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재심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sup>1)</sup>을 제외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준용규정]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나. 검토의견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 현황

현행법 제6장(제21조~제28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함.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 개요 >

- 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하기 위해 우수 사업장에 인증 부여
- 근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6조
- 대상: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농산물 직매장 등)
- 인증혜택: 홍보·마케팅비 지원(5백만원), 직거래종합정보 시스템(바로정보)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5. 4. 14.

해당 인증은 크게 ① 서류검토, ② 인증심사, ③ 인증 최종심의, ④ 인증서 발급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현행법 제30조제2항제4호<sup>2)</sup>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이하 “aT”라 한다)의 장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 과정에 aT도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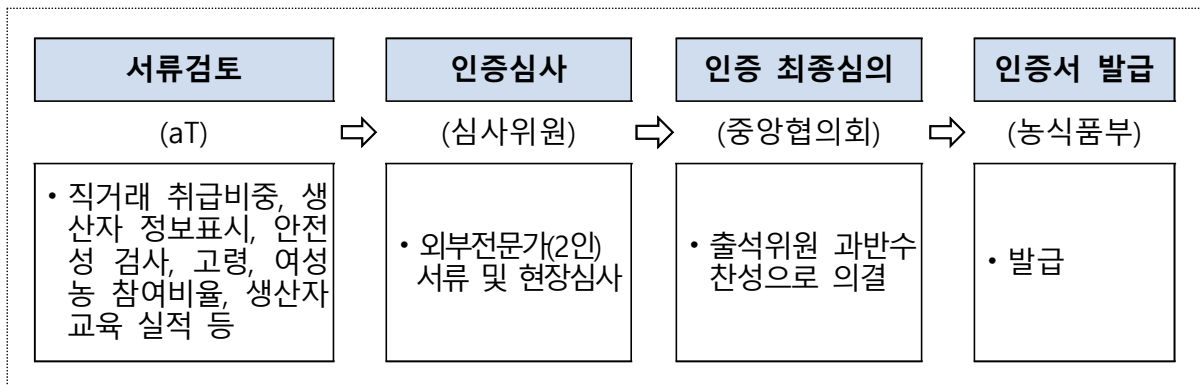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절차 >



주: 중앙협의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5. 4. 11. (일부 재가공)

법률 제정(2015. 6. 22.) 이후 2024년까지 총 54건의 인증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45건(약 83.3%)에 대하여 인증이 부여되었으며,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사례는 아직까지 없음.

## < 연도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현황(~'24년) >

(단위: 건)

| 구분 |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신청 | 54 | 14    | 12    | 7     | 4     | 8     | 2     | 7     |
| 인증 | 45 | 12    | 9     | 7     | 3     | 8     | 1     | 5     |

주: 2016. 6. 23. 법률 시행 이후, 2017년의 실적을 제출받아 2018년부터 인증을 실시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5. 4. 14.

한편, 2025년에는 14건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음.

## 2) 유사법률안 제출 현황

동 개정안 외에도 현행법률의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4건<sup>3)</sup> 있으며, 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25년 3월 2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동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의 개정안 모두 현행법령 상의 이의신청 제도에 있어 ① 이의신청 제기 기간, ②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간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체로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임.

###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정비 관련 개정안 >

| 개 정 안              | 내 용                           | 현행<br>(하위법령)   | 개정안         |
|--------------------|-------------------------------|----------------|-------------|
| 농산물직거래법<br>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br>인증 재심사 의뢰 기간 | 7일             | 30일         |
|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 재심사 완료 후<br>7일 | 14일         |
| 동물보호법<br>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br>재심사 의뢰 기간    | 7일             | 30일         |
|                    |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 7일             | 7일          |
|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 2개월            | 지체 없이       |
| 사료관리법<br>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 10일            | 30일         |
|                    |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              | 14일         |
|                    |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 20일            | 행정기본법<br>적용 |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1)

| 개 정 안              | 내 용                                    | 현행<br>(하위법령) | 개정안              |
|--------------------|----------------------------------------|--------------|------------------|
| 축산법<br>일부개정법률안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br>·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br>의뢰 기간 | 7일           | 30일              |
|                    |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7일           | 7일               |
|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 10일          | 행정기본법<br>(단서 제외) |
|                    | 시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 7일           | 30일              |
|                    |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7일           | 7일               |
|                    |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 7일           | 행정기본법<br>(단서 제외) |
| 친환경농어업법<br>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식품등의<br>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br>재심사 의뢰 기간   | 7일           | 30일              |
|                    |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7일           | 7일               |
|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 10일          | 행정기본법<br>(단서 제외) |
|                    |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br>의뢰 기간                 | 7일           | 30일              |
|                    |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 10일          | -                |
|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 3개월          | 행정기본법<br>적용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8.

### 3) 검토의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신청 절차를 규정하면서,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sup>4)</sup>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신청인이 행정쟁송 외의 방법으로도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한 방식의 권리구제 제도임.

현행법 제22조제6항의 위임을 받은 현행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① 신청인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신청 및 결과통지 기한을 규정함.<sup>5)</sup>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는 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②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증 신청·심사·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 현행법령과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규정 비교 ＞

| 구분          | 현행법령                  | 「행정기본법」                | 비고                                                                       |
|-------------|-----------------------|------------------------|--------------------------------------------------------------------------|
| 신청기한        | <u>7일</u> 이내          | <u>30일</u> 이내          | - 「행정기본법」 이<br>보다 상대방에게 유리                                               |
| 심사기한        | 별도 규정없음               | 별도 규정없음                | - 「행정기본법」 은<br>심사기한이 결과<br>통지기한에 연계됨<br>- 「행정기본법」 이<br>보다 상대방에게 유리       |
| 결과 통지<br>기한 | <u>완료일부터 7일</u><br>이내 | <u>신청일부터 14일</u><br>이내 | - 「행정기본법」 은<br>부득이한 경우<br><b>10일 연장 가능</b><br>- 「행정기본법」 이<br>보다 상대방에게 유리 |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4.

두 규정을 비교하면, 현행법령은 「행정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보다 ① 이의신청의 신청기한이 보다 짧고, ② 신청일이 아닌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과 통보 기한을 규정함에 따라 심사기한에 대한 별도 제약이 없음.

### [준용규정]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로 인하여 현행법령은 「행정기본법」에 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농산물직거래법」(2015년 제정)의 재심사 규정에 비하여 「행정기본법」(2021년 제정)의 이의신청 규정이 늦게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참고로 「농산물직거래법」은 가장 최근 개정일이 2020년 12월 29일(타법개정, 2021년 12월 30일 시행)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일 이전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없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재심사의 신청기한을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결과 통지 기한을 재심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한과 일치시키는 한편, ②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제도 역시 이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상의 제도는 「행정기본법」보다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별도의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권리구제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sup>6)</sup>의 통지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은 제외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해당 입법례들은 「행정기본법」과 달리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 기한을 “14일 이내”로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 내부적 체계 문제를 고려한 취지로 보임.

### <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적용을 제외하는 입법례 >

| 연번 | 입법례                                    |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 |
|----|----------------------------------------|---------------|
| 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0일 이내        |
|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일 이내        |
| 4  | 관광진흥법                                  |               |
| 5  | 지하수법                                   |               |
| 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
| 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일 이내        |
| 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
| 10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5.

개정안의 경우, 재심사의 결과 통지 기한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므로, 이러한 입법례들과 달리 별도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은 낮아 보임.

#### 6)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안 제22조제6항과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 같은 조 제7항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안 제22조제6항에서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안 제22조제7항에서 “그 밖에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그런데 법문언상으로는 재심사에 대하여 ①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이를 따르고, ②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므로, 위임규정인 제7항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① 위임규정인 안 제22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으로,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안 제22조제6항은 같은 조 제7항으로 각각 이동시킨 후,

② 제4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위임사항을 제외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두 규정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여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한 관계를 정립하는 경우가 있음.

### < 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유사 입법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지하수법」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4.

## 2.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①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②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개 정 안                                                                                                                                                                                                                                                                                                                     |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재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p>※ 부칙 제2조 관련 개정규정</p> <p>안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수용함.

## 나. 검토의견

### 1) 부칙 제1조: 시행일

개정안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 개 정 안                                 |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재심사의 ① 신청기한과 결과 통지 기한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② 그 외의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심사의 신청기한(7일 이내 → 30일 이내)과 결과 통지 기한(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현재 신청기한과 결과 통지 기한을 규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정한 것은 적절해 보임.

## 2) 부칙 제2조: 재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 개 정 안                                                                                                                                               |  |
|-----------------------------------------------------------------------------------------------------------------------------------------------------|--|
| 부 칙                                                                                                                                                 |  |
| 제2조(재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b>※ 부칙 제2조 관련 개정규정</b>                                                                                                                             |  |
| <b>안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                                                                                                              |  |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
| ⑤ (현행과 같음)                                                                                                                                          |  |
|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

적용례는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임.<sup>7)</sup>

제22조의 개정규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 재심사 신청 기한을 변경하고(7일 이내 → 30일 이내), ② 재심사 결과 통지 기한을 변경하며(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③ 그 외의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임.

7)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847.

따라서,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심사에 적용되는 기한과 규정이 변경되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이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재심사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한과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16 |